
부록

경상북도 시·군 집행계획 수립 기본지침(안)

부록 1. 경상북도 시·군 집행계획 수립 기본지침(안)

제1장 총 칙

1. 지침의 목적

- 1.1 이 지침은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2항 및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 자원순환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경상북도 자원순환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경상북도 시·군의 자원순환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그 목적이 있다.
- 1.2 시장·군수는 동 지침을 반영하여 관할지역의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시·군의 자원순환 실정을 반영한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 1.3 이 지침은 “시·도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지침(환경부, 2018.9.)”의 내용을 기초로 하며,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시·도 자원순환시행계획수립지침(환경부, 2018.9.)”에 근거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 1.4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목표산정 방법은 “시·도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도 및 추진실적 제출 안내(한국환경공단)”의 [별표 1] 자원순환 실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2. 지침의 구성

- 2.1 이 지침은 다음의 사항으로 구성한다.
 - (1) 집행계획의 의의, 성격, 지위와 법적근거 등을 제시하는 총칙 및 계획수립의 범위, 기본원칙, 절차 등을 정하는 내용
 - (2) 계획수립의 근거가 되는 자료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을 제시하는 기초조사, 기존 자원순환 관련 계획의 성과평가 및 계획
 - (3) 정책단계별(생산단계, 소비단계, 관리단계, 재생단계) 세부 추진계획(목표, 추진, 전략,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부문별 추진계획
 - (4)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재정투자 효율화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자원순환시설을 포함한다.) 설치 현황 및 확충계획
 - (5) 기타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사항

3. 집행계획의 성격

- 3.1 집행계획은 단순한 사업계획이나 투자계획이 아닌 관할지역내 자원 및 폐기물을 종합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수립·시행하는 계획이다.
- 3.2 집행계획 수립의 책임을 지는 시장·군수는 상위계획인 국가환경종합계획, 자원순환기본계획 및 경상북도 자원순환시행계획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당해지역의 지역적,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며 향후 자원순환 여건 변화를 전망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 3.3 집행계획의 명칭은 “○○시·군 자원순환집행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집행계획의 법적근거

4.1 법적근거

- (1)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집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 시행)
- (2)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8조(집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 시행)

4.2 집행계획 내의 각 부문별 계획은 상·하위 계획 및 종합대책들의 내용을 포함하며 상호 연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1) 상위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자원순환기본계획, 경상북도자원순환시행계획 등
- (2) 하위계획: 각종 폐기물처리시설 투자·설치계획 등
- (3) 관련계획: 폐자원에너지화종합대책, 음식물쓰레기줄이기종합대책, 폐금속자원재활용대책, 재활용폐기물관리종합대책 등

제2장 집행계획 개요

1. 계획수립 주체

1.1 집행계획의 수립주체는 시장·군수이다.

2. 계획수립 범위

2.1 시간적 범위

- (1) 집행계획의 목표연도는 원칙적으로 계획수립시점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단, 제1차 시·군의 집행계획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계획목표 기간에 준하여 설정한다.
 - 계획기간: 2018년 ~ 2022년(시행계획의 계획기간)
 - 기준년도: 2016년
 - 목표연도: 2022년(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차별 목표 제시)
- (2) 자연적, 사회적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3) 자연적, 사회적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2.2 공간적 범위는 해당 시·군의 관할지역으로 하되, 폐기물 적정처리와 재정투자 효율화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전략 등에 따라 인접한 시·군과 연계할 수 있다.

2.3 집행계획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시된 항목의 일부를 제외하거나, 제시된 항목 이외의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 (2) 경상북도의 자원순환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관할 시·군의 해당 연도의 세부추진계획
- (3)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는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 계획
- (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 (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 (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
- (7) 폐기물 처분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3. 계획수립의 기본원칙

3.1 종합성

- (1)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래의 전망을 예측하며 시행의 과정과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며 개략적으로 수립한다.

3.2 정합성

- (1) 국가환경종합계획,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자원순환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한다.
- (2) 자원순환 추진방향, 부문별 계획,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계획, 재정계획 등 계획의 내용은 최상위 환경목표와 부합하고 일관성이 확보되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3.3 명확성

- (1) 계획서 내용 중 각종 현황조사 및 자료의 양의 과다하지 않으며, 지역주민과 관내기업에게 예측 가능한 행정계획이 되도록 작성한다.
- (2) 계획의 논리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계획서 상의 문장은 원칙적으로 주서와 서술어가 분명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3) 계획에 제시된 현황 기초자료는 국가통계, 경상북도 통계연보 및 시·군 통계연보 등의 자료를 사용하되, 그 외의 자료는 출처를 명확히 하여 작성한다.

3.4 지역특성의 반영

- (1) 지역마다 지니고 있는 문제의 특성과 과제를 반영한다.
- (2) 지침에서 제시하는 기준은 집행계획 수립에 있어 일반적이고 최소한의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이 기준 중 일부가 계획대상지역의 여건 등에 비추어 불합리한 때에는 기준 중 항목을 추가·변경하거나 기준의 내용을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3.5 최적화 전략의 반영

- (1) 계획에는 폐기물의 순환이용 촉진 및 적정처분과 시설 설치·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전략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 (2)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계획을 마련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지역의 자원순환 추진방향, 폐기물 발생처리 현황, 폐기물처리시설(민간시설 포함) 설치·운영 실태, 지역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4. 계획수립(변경·시행)의 절차

4.1 “시·군 자원순환집행계획” 제출(시·군 → 경상북도)

- (1) 시장·군수는 집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읍·면·동에서 기초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고, 기초자료에 대하여 중복여부 및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후 동 지침의 지시사항을 반영하여 집행계획(안)을 수립하여 경상북도지사에 게 제출한다.
- (2) 시장·군수는 개별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들과 집행계획과의 연계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하여 각 유관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2 집행계획의 보완(경상북도 → 시·군)

- (1) 도지사는 시·군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4.3 집행계획의 시행

- (1) 시장·군수는 집행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해당실과에 송부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이해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2) 시장·군수는 집행계획의 내용을 소관업무와 관련된 정책 및 부문별 사업계획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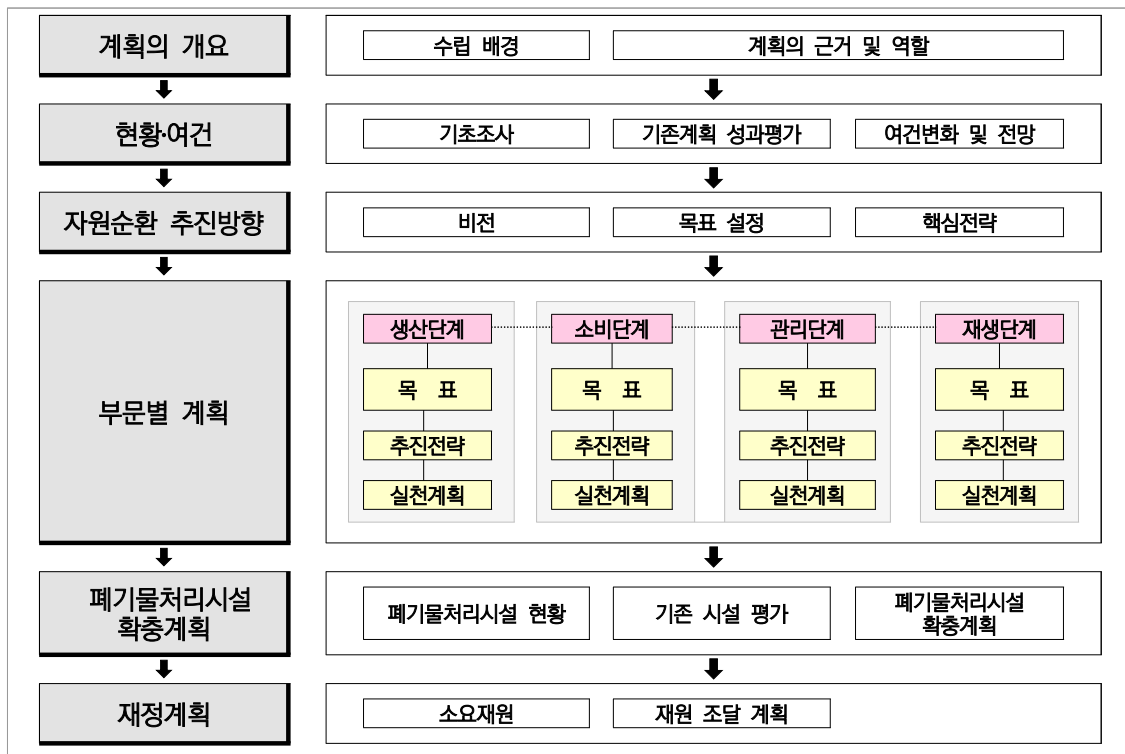
4.4 집행계획의 변경

- (1) 자원순환 정책방향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집행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2) 변경을 요청받은 시장·군수는 변경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집행계획의 구성

1. 구성체계

- 1.1 집행계획에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7항의 각호를 따른 7가지 사항을 포함하는 동시에 전체 계획내용을 도출하는 과정이나 원리, 혹은 각 요소의 관례 등을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 1.2 집행계획을 크게 「현황·여건」,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부문별 세부추진계획」,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계획」, 「재정계획」으로 구성하고, 「부문별 계획」은 다시 「목표」, 「추진전략」, 「실천계획」의 3가지로 구분한다.
- 1.3 기초조사, 기존계획 성과평가, 여건변화 및 전망 등 「현황·여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원순환 추진방향」에서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부문별 계획」에서 그 「자원순환 추진방향」을 실천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 1.4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계획」에서는 해당지역 및 인근지역의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시설실태평가 결과 등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에 기반한 구체적인 시설설치 및 투자계획을 수립한다.
- 1.5 구성체계는 시·군의 여건 등에 따라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림 부록-1〉 집행계획 추진 체계

〈집행계획 구성체계(예시)〉

2. 기초자료 확보

- 2.1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조사의 내용, 조사 및 분석방법, 결과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러한 관할지역에 대한 조사·분석의 자료가 집행계획의 수립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2.2 시장·군수는 집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자연환경, 인문환경, 폐기물관리 현황, 기타 집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사·분석을 하여야 한다.
 - (1) 자연환경: 위치, 지형 및 지세, 기상 및 기후 등
 - (2) 인문환경: 행정구역, 인구, 주거형태, 토지이용현황, 수거·운반·보관현황,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폐기물관리제정 등
- 2.3 자료조사는 독자적 조사와 기존자료 활용을 병행하되, 시행계획 자료조사 결과와 연계되도록 한다.
- 2.4 기초조사는 기준년도(2017년)를 중심으로 조사하되, 기준년도의 자료를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항목은 과거자료로부터 추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 2.5 집행계획에서는 아래의 <표 부록-1>에서 열거한 대항목과 세부항목을 참조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내용 중에서 관할지역의 여건에 부합되지 않은 사항은 조사에서 추가·제외할 수 있다.
- 2.6 기초조사는 각종 문헌이나 통계자료의 수집, 현장조사 등의 방법을 고루 활용하되, 문헌이나 각종 통계자료를 조사한 후 현지답사 등을 통하여 현지 확인 및 검증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이도록 한다.

〈표 부록-1〉 기초조사 세부항목 및 조사내용

대항목	세부항목	조 사 내 용	비 고
자연 환경	위치	지리적 위치, 수리적 위치 등	기존자료
	지형 및 지세	지질구조, 표고분석, 경사도분석, 주요산, 주요하천 등	기존자료 (지형도, 지질도 등)
	기상 및 기후	기온, 강수량, 일조, 주풍방향, 풍속, 안개일수, 과거 풍수해 기록 등	기상청 제공 자료
인문 환경	사·도의 역사	사·도의 기원, 성장과정, 발전연혁 등	기존자료
	행정구역	행정구역변천, 도시계획구역 변천, 행정조직 등	기존자료
	인구	인구추이, 인구밀도, 인구구성(연령별, 성별, 산업별, 생활권별), 인구이동현황 등	기존자료 및 현지조사
	주거형태	유형별·규모별 주택수, 주택보급률, 주거수준 등	기존자료 및 현지조사
	토지이용현황	용도지역별 분포, 토지지목별 분포, 임상, 시가화 동향, GIS 구축내용, 주요 개발사업 등	기존자료 및 현장조사
	경제	지역총생산, 경제활동인구 등	기존자료
	산업구조	사업체수, 종사자수, 산업단지 현황, 특화산업 등(산업단지 개발계획 포함)	기존자료
	교통시설	도로·철도·항만 등 기반시설, 교통량 분석 등	기존자료 및 현장조사
	공공·문화시설	공공청사, 교육문화시설, 공원/녹지 등	기존자료 및 현장조사
	각종 관련계획	상위계획, 관련계획상의 관련부분	기존자료
폐기물 관리현황	발생현황	폐기물종류별 발생현황, 시·군·구별 발생현황 등	기존자료 (환경부 제공 통계 등)
	처리현황	폐기물종류별 처리현황, 처리방법(매립, 소각, 재활용 등)별 처리현황, 시·군·구별 처리현황 등	기존자료 (환경부 제공 통계 등)
	수거·운반·보관 현황	폐기물종류별, 시·군·구별 청소방식, 수거체계, 처리비용, 청소장비 및 인력현황 등	기존자료 (환경부 제공 통계 등)
	시설현황	매립시설, 소각시설, 재활용선별장,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매립지정비, 폐기물감량화시설, 폐기물에너지회수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현황, 향후 사용가능연한 등	기존자료 및 현황조사
	재정	폐기물관리 재정(세입·세출구조), 폐기물 관련 지자체 예산 및 재정자립도, 폐기물처리시설 투자실적 자료 등	기존자료
	온실가스 배출량	폐기물부문 카테고리별 온실가스 배출량(매립, 하폐수처리, 소각, 생물학적 처리 등)	기존자료

3.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 3.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평가 및 분석을 통해 추후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위한 Feed-back 자료로 활용한다.
- 3.2 기존 자원순환 정책의 이행실적에 대한 성과평가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가급적 계량화하여 알기 쉽게 나타내어야 한다.
- 3.3 성과평가는 자원순환 정책 추진실적에 대한 종합평가와 부문별 세부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4. 여건변화와 및 전망

- 4.1 기초조사, 기존 정책 등을 토대로 장래의 정책환경 변화, 폐기물별 발생량 및 기타 추후 발생가능한 문제점 등을 미리 예견하여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의 방향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4.2 당해지역의 자연적·경제적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전망하되, 부문별 정책과제와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구성한다.
 - (1) 자연적 여건변화: 기상 및 기후 등의 변화
 - (2) 사회적 여건변화: 토지이용현황, 인구증감, 소비패턴, 에너지(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도시변화(재건축 등), 산업구조, 주거형태, 교통 시설 등의 변화 및 대규모 개발사업 계획 등
 - (3) 경제적 여건변화: 지역총생산, 사업체수 등의 변화
 - (4) 기타 지역여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지역 정책변화요인을 전망하고 정책과제를 도출
- 4.3 인구전망은 도계획, 도시기본계획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의 계획인구 및 계량모형에 의한 통계기법을 병행하여 추정한다.
- 4.4 당해지역의 폐기물발생량, 수집·운반 체계변화, 순환이용 및 처분 체계변화 등을 고려하여 자원순환 여건변화를 전망하되, 부문별 정책과제와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구성한다.

5. 자원순환 추진방향

- 5.1 자원순환 여건변화의 전망 및 관련계획 검토 등을 토대로 부문별 세부 추진 계획을 이끌어가기 위한 자원순환 추진방향을 설정한다.
- 5.2 시행계획 전반에 적용될 비전을 먼저 설정한 후 자원순환 목표를 수립하고, 자원순환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전략을 수립한다.
 - (1) [비전]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자원순환의 미래상을 달성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 (2) [자원순환 목표]는 원칙적으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합한 전체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며(인구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예외적으로 생활폐기물만을 대상으로 함), [실천목표]는 생활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한다.
 - (3) 경상북도 시·군별 목표연도(2022년) 자원순환 목표는 [붙임 1]을 따른다.
 - (4)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고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의 전반에 걸쳐 적용될 3~5가지 정도의 핵심전략을 설정한다.
 - (5) 핵심전략은 비전보다는 보다 상세하고 현실적으로 설정하고 부문별 계획보다는 포괄적으로 설정한다.

자원순환 추진방향 사례

- 비전
 - 자원의 선순환으로 지속가능한 지역 순환경제 실현
- 정책목표
 - 폐기물 원단위 발생량
 - 지역총생산당 발생량 00.0 → 00.0톤/년·십억원 (25% 감축)
 - 인구당 발생량 0.00 → 0.00kg/일·인 (15% 감축)
 - 순환이용률 70.3 → 82.0%
 - 최종처분율 9.1 → 3.0%
- 핵심전략
 - 환경보호 및 주민만족을 지향하는 자원순환체계 확립
 - 주민 참여에 기반한 폐기물 처리 최적화
 -

5.3 시·군의 자원순환 목표는 관할구역의 폐기물 발생 및 자원순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상북도 자원순환 목표에 달할 수 있도록 아래의 절차에 따라 적용 대상 폐기물별 연차별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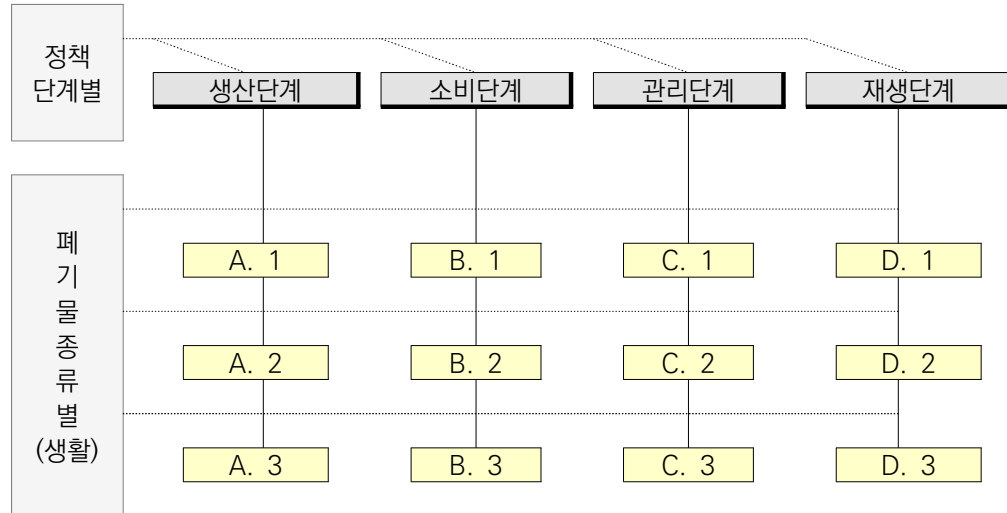
5.4 시·군의 연차별 자원순환 목표는 기준년도 실적보다 향상된 수치를 적용한다.

6. 부문별 계획

- 6.1 시·군의 자원순환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관할 시·군의 추진실적 및 환경변화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연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다.
- 6.2 각 부문별 계획은 다양한 전개기준(정책단계별, 폐기물종류별 등)을 통해 전체 논리구성의 체계를 설정한다. 정책단계별로는 기본계획에 따라 「생산단계」, 「소비단계」, 「관리단계」, 「재생단계」로 분류하여 작성한다.
- 6.3 각 부문별 계획의 특징 및 지자체 고유의 조직체계에 따라 부문별 계획의 내용구성 중 일부요소를 묶거나 유사한 부문별 계획들을 하나로 묶어 제시할 수 있다.

부문별 계획 작성체계(예시)

- 정책단계별(생산단계, 소비단계, 관리단계, 재생단계)·폐기물종류별(생활폐기물) 전개기준에 의한 논리전개 과정



주: A부터 D는 각 부문별 계획

	A	B	C	D
1	자원생산성 효율화	생활 속 폐기물 발생 억제	배출·수거·선별체계 혁신	고부가가치 재활용 촉진
2	생산단계 폐기물 원천감량	자원 효율적인 친환경 소비 촉진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및 처리 최적화	물질 재활용 중심의 재활용 체계 개편
3	자원순환성을 고려한 제품 설계	자원순환 문화 조성 및 확산	폐기물 안전 관리 강화	재활용 시장 안정화 및 산업 육성

7. 전년도 폐기물 발생량 및 해당 연도 발생 예상량

- 7.1 시·군의 전년도 폐기물 발생량은 폐기물 통계 및 자원순환성과시스템에 제시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한다.
- 7.2 해당연도 발생 예상량은 기초조사, 폐기물별 발생량, 재활용량 및 소각·매립량 변화추이 및 기타 추후 발생가능한 문제점 등을 미리 예견하여, 추후 수립되는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의 방향설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8. 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현황 및 설치계획

- 8.1 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중이거나 설치계획이 있는 시·군의 경우 전년도 설치현황 및 해당년도 설치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8.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현황의 대상이 되는 시설은 생활폐기물 회수선별시설 등 재활용 기반시설, 매립시설, 소각시설,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시설, 매립가스자원화시설 등이다.
- 8.3 계획 수립은 기본계획의 폐기물처리시설 정비계획을 반영하고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시·군 권역 내에서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광역화, 대형화, 집적화 등
2. 시설의 질적 고도화 및 수명연장
3. 폐기물을 타 환경기초시설과 연계처리 및 병합처리
4. 폐기물처리 비용절감을 위한 민간처리시설의 활용(위탁처리)
5. 시설의 가동률 제고 등을 위한 최적화기술의 적용
6. 유해하지 않은 생활계와 사업장계 폐기물의 교차처리 등

8.4 확정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투자계획을 수립한다.

투자계획 산정 사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산정

(단위: 백만원)

시 설 명	사업 내용	사업 규모	사업 기간	총사업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총 계	-	-	-	122,500	200	6,300	...		
① 생활자원회수센터	대수선	00톤/일	'18.6~'20.2	2,500	100	5,000	...		
② 매립시설	증설	00만㎡	'19.3~'27.2	30,000	-	500	...		
③ 비위생매립지 정비	신설	0만㎡	'18.7~'20.6	10,000	100	500	...		
④ 유기성에너지화시설	신설	00톤/일	'18.6~'22.12	50,000	-	300	...		
⋮	⋮	⋮	⋮	⋮	⋮	⋮	...		

* 사업내용: 신설, 증설, 대체신설, 대수선 등, '18년~2017년까지 매년 소요비용 산정

9. 재정계획

- 9.1 부문별 사업에 따른 소요재원을 추정하고 세입원칙, 조달방법 및 투자우선원칙 등을 고려하여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한다.
- 9.2 소요재원은 각 정책단계별(생산단계, 소비단계, 관리단계, 재생단계 세부 사업내용별(자원생산성 효율화, 생산단계 폐기물 원천감량, 자원순환성을 고려한 제품 설계, 생활 속 폐기물 발생 억제 등)로 관련제도 도입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을 제시한다.
- 9.3 재원조달계획은 소요재원에 대해 국고, 지방비, 민간유치 등을 구분하여 제시한다.

붙임 1. 시·군별 자원순환 목표

1. 자원순환 목표 설정 기본원칙

- 1.1 시·군의 자원순환 목표는 관할구역의 폐기물 발생 및 자원순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상북도 자원순환 목표에 달할 수 있도록 아래의 절차에 따라 적용대상 폐기물별 연차별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한다.
- 1.2 시·군의 연차별 자원순환 목표는 기준년도 실적보다 향상된 수치를 적용한다. 다만, 시·군이 국가 자원순환 목표를 이미 달성한 경우에는 기준년도 실적을 유지하도록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 1.3 자원순환 목표 설정 절차는 ①기준년도 실적평가(2016년), ②과년도 자원순환 추이 분석, ③폐기물발생 및 처리여건 조사, ④자원순환 목표 설정이다.

2. 자원순환 목표(최종처분율 및 순환이용률) 산정방법

최종처분율	최종처분량(톤)	
	폐기물발생량(톤)+순환자원인정량(톤)	× 100
	※최종처분량 = 직접최종처분량(직매립) + 간접최종처분량(간접매립)	
순환이용률	실질재활용량(톤)+순환자원 인정량(톤)	
	폐기물발생량(톤)+순환자원인정량(톤)	× 100
	※실질재활용량 = 재활용과정에서 발생된 잔재물량을 제외한 량 (재활용량-잔재물량)	
에너지 회수율	에너지화된 폐기물(톤)	
	에너지 가용폐기물 발생량(톤)	× 100
	※에너지 가용폐기물 발생량은 가연성 및 유기성 폐기물의 발생 총량	

3. 시·군별 제1차 자원순환 집행계획 목표연도(2022년) 자원순환 목표(안)

〈표 부록-2〉 시·군별 자원순환 목표

(단위: %)

시·군	생활		사업장배출시설계		건설		지정	
	순환 이용률	최종 처분율	순환 이용률	최종 처분율	순환 이용률	최종 처분율	순환 이용률	최종 처분율
국가최종	61.1	7.7	83.1	3.2	88.9	0.9	51.6	26.3
경상북도	39.9	26.8	67.1	21.5	95.9	3.0	39.2	37.3
포항시	41.7	37.6	70.8	21.0	94	4.5	45.6	37.8
경주시	47.4	15.6	59	25.2	94.8	3.8	23.6	36.9
김천시	39.7	26.4	45.7	29	96.7	2.5	25.4	26.8
안동시	36.2	33.3	31.6	25.1	96.2	2.6	5	52.7
구미시	39.6	18.6	58	24.9	95.5	3.1	44.7	20.8
영주시	31.2	37.8	68.8	20.6	96.3	2.5	32.5	29.2
영천시	42.9	16.8	51.4	30.4	96.3	2.8	39.4	51.6
상주시	36.2	16.6	54.4	20.4	95.9	2.8	2.2	89.2
문경시	25.1	23.4	28.6	41	97.2	2.1	3.6	77.1
경산시	45.4	18.6	57.0	19.5	95.7	3.1	24.8	38.3
군위군	20	37.8	63.1	25.2	97.3	2	69.3	29.9
의성군	37.8	28.3	80.4	14.5	97.3	2.1	4.5	90.5
청송군	26.6	16.1	83.1	12.5	97.1	2.2	6.6	89.8
영양군	17.5	46.7	79.2	16.8	97	2.3	-	86.7
영덕군	26.3	20.2	75.4	18.8	97.3	2.1	-	86.7
청도군	37.6	24.1	55.3	28.5	97.6	1.9	4	91.5
고령군	22.4	15	86.2	7.5	97.2	2.1	36.5	54.8
성주군	31.9	18.5	68.5	16.5	96.5	2.7	30.2	32.9
칠곡군	15.9	14.4	25.7	27.6	95.9	3	50.7	25.7
예천군	44.1	14.5	68.6	18.2	96.1	3	-	87.4
봉화군	34.6	35.9	4.5	56.2	97.2	2.2	0.1	99.7
울진군	36.8	18.1	51.9	30.7	96.8	2.4	15.5	67.1
울릉군	12.5	25.8	3.5	57.9	96.9	2.5	24.2	75.8

4. 생활계 폐기물

〈표 부록 3〉 시·군별 생활계 폐기물 추진실적 및 목표

(단위: %)

구분	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		
	실적		목표	실적		목표
	2016년	2017년	2022년	2016년	2017년	2022년
경상북도	32.7	35.9	39.9	43.6	42.2	26.8
포항시	34.5	43	41.7	65.5	56.6	37.6
경주시	42.3	49.1	47.4	29.1	28.2	15.6
김천시	39	31.8	39.7	41.9	48.9	26.4
안동시	26.1	45.8	36.2	68.7	50.7	33.3
구미시	30.8	31.6	39.6	26.3	37.2	18.6
영주시	31.8	25.3	31.2	67.8	74.7	37.8
영천시	39.5	37.3	42.9	31.4	27.7	16.8
상주시	33.2	25.4	36.2	27	27.7	16.6
문경시	27.8	19.7	25.1	40.7	48.4	23.4
경산시	40.6	39.5	45.4	26.3	29.4	18.6
군위군	18.7	10.8	20	64.8	75.1	37.8
의성군	34.8	32.3	37.8	36.1	44.9	28.3
청송군	23.7	9.8	26.6	28.7	28	16.1
영양군	15.1	12.2	17.5	77.8	80.9	46.7
영덕군	32.9	38.8	26.3	36	37.1	20.2
청도군	19.6	33	37.6	42.7	42	24.1
고령군	18.3	18.5	22.4	22.4	27	15
성주군	20.7	35.1	31.9	32.3	26.4	18.5
칠곡군	14.7	12.2	15.9	24.1	24	14.4
예천군	34.6	48.3	44.1	28.9	25.7	14.5
봉화군	30.3	30	34.6	69.2	70	35.9
울진군	31.3	29	36.8	36.7	32.7	18.1
울릉군	4.6	19.8	12.5	55.4	32.5	25.8

5.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표 부록 4〉 시·군별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추진실적 및 목표 (단위: %)

구분	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		
	실적		목표	실적		목표
	2016년	2017년	2022년	2016년	2017년	2022년
경상북도	61.1	66	67.1	36.1	31.2	21.5
포항시	64.3	68.4	70.8	35.1	31	21
경주시	53.6	55	59	42.1	30.4	25.2
김천시	41.5	52.8	45.7	48.4	40.7	29
안동시	28.7	73.6	31.6	41.9	23.4	25.1
구미시	52.7	59.4	58	41.7	35.5	24.9
영주시	62.5	62.9	68.8	34.5	34.6	20.6
영천시	46.6	54.6	51.4	50.8	43	30.4
상주시	49.4	64.8	54.4	34.2	29.9	20.4
문경시	26	63.6	28.6	68.6	34.7	41
경산시	51.7	51.7	57.0	32.6	32.6	19.5
군위군	57.3	66.2	63.1	42.1	33.4	25.2
의성군	73	78.5	80.4	24.3	20.9	14.5
청송군	77.1	79.2	83.1	20.9	20.8	12.5
영양군	71.9	81.3	79.2	28.1	18.8	16.8
영덕군	68.4	69.4	75.4	31.4	30.6	18.8
청도군	50.2	75.5	55.3	47.6	24.5	28.5
고령군	86.2	85.7	86.2	12.6	12.8	7.5
성주군	62.2	59.5	68.5	27.5	31	16.5
칠곡군	23.3	23.3	25.7	46.2	46.1	27.6
예천군	62.3	68	68.6	30.5	30.4	18.2
봉화군	4.1	4.8	4.5	93.9	93.2	56.2
울진군	47.2	60.8	51.9	51.3	36.4	30.7
울릉군	3.2	3.5	3.5	96.8	96.5	57.9

6. 건설 폐기물

〈표 부록-5〉 시·군별 건설 폐기물 추진실적 및 목표

(단위: %)

구분	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		
	실적		목표	실적		목표
	2016년	2017년	2022년	2016년	2017년	2022년
경상북도	95.9	96.2	95.9	3.8	3.6	3.0
포항시	94	93.1	94	5.7	6.6	4.5
경주시	94.8	96.2	94.8	4.8	3.4	3.8
김천시	96.7	96.6	96.7	3.2	3.1	2.5
안동시	96.2	96.8	96.2	3.3	3	2.6
구미시	95.5	95.5	95.5	3.9	3.9	3.1
영주시	96.3	96.6	96.3	3.2	3.2	2.5
영천시	96.3	96.6	96.3	3.6	3.1	2.8
상주시	95.9	96.9	95.9	3.6	2.8	2.8
문경시	97.2	97.4	97.2	2.7	2.6	2.1
경산시	95.7	96.7	95.7	4	3.1	3.1
군위군	97.3	97.1	97.3	2.6	2.9	2
의성군	97.3	96.8	97.3	2.7	3	2.1
청송군	97.1	97.1	97.1	2.8	2.9	2.2
영양군	97	97.1	97	2.9	2.6	2.3
영덕군	97.3	96.5	97.3	2.7	3.4	2.1
청도군	97.6	96.2	97.6	2.4	3.7	1.9
고령군	97.2	97.5	97.2	2.7	2.5	2.1
성주군	96.5	97	96.5	3.4	2.8	2.7
칠곡군	95.9	97.3	95.9	3.8	2.6	3
예천군	96.1	96	96.1	3.9	3.6	3
봉화군	97.2	97.5	97.2	2.8	2.5	2.2
울진군	96.8	96.7	96.8	3	3.1	2.4
울릉군	96.9	96.9	96.9	3.1	3.1	2.5

7. 지정 폐기물

〈표 부록-6〉 시·군별 지정 폐기물 추진실적 및 목표

(단위: %)

구분	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		
	실적		목표	실적		목표
	2016년	2017년	2022년	2016년	2017년	2022년
경상북도	39.2	39.9	39.2	37.3	38.9	37.3
포항시	44.8	46.2	45.6	38.1	37.5	37.8
경주시	23.6	31.2	23.6	36.9	43.7	36.9
김천시	25.4	27.4	25.4	26.8	27.9	26.8
안동시	5	4.1	5	52.7	57.5	52.7
구미시	44.7	42.7	44.7	20.8	21.6	20.8
영주시	32.5	42.2	32.5	29.2	31.5	29.2
영천시	39.4	34.4	39.4	51.6	57.9	51.6
상주시	2.2	1	2.2	89.2	90	89.2
문경시	3.6	9	3.6	77.1	64	77.1
경산시	24.8	33.7	24.8	38.3	41.7	38.3
군위군	69.3	-	69.3	29.9	92.3	29.9
의성군	4.5	-	4.5	90.5	92.3	90.5
청송군	6.6	4.8	6.6	89.8	89.8	89.8
영양군	-	-	-	86.7	100	86.7
영덕군	-	-	-	86.7	94.3	86.7
청도군	4	-	4	91.5	95.8	91.5
고령군	36.5	35.5	36.5	54.8	51.9	54.8
성주군	30.2	38.6	30.2	32.9	34.5	32.9
칠곡군	50.7	55.8	50.7	25.7	27.9	25.7
예천군	-	5.5	-	87.4	82.2	87.4
봉화군	0.1	-	0.1	99.7	99.8	99.7
울진군	15.5	20.8	15.5	67.1	63.7	67.1
울릉군	24.2	-	24.2	75.8	100	75.8

붙임 2. 연차별 집행계획

1. 법적 근거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41호, 2020. 3. 24, 일부개정]

제8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 ⑥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년도 11월 30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9.>
- ⑦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소속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자원순환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관할 시·군·구의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3.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 계획
 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
 7. 폐기물 처분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 ⑧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작성 매뉴얼

○○○○년도 경상북도 ○○시·군 집행계획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 폐기물 종류별 목표 대비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폐기물 종류	구 분	○○○○년		평가 및 분석
		목표	실적	
생활계 (가정생활+사업장생활계)	감량후발생량(톤/년)			
	1인당 발생량 (kg/인/일)			
	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			
사업장배출시설계	감량후발생량(톤/년)			
	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			
지정	감량후발생량(톤/년)			
	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			
건설	감량후발생량(톤/년)			
	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			

▶ ○○시·군 전년도 세부 추진 계획 평가 및 분석

정책단계	부문별 계획	○○○○년 실천계획	○○○○년 투자계획 (백만원)	추진 여부
생산단계				
소비단계				
관리단계				
재생단계				

2) 경상북도 자원순환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시·군의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 계획

정책단계	부문별 계획	○○○○년 실천계획
생산단계		
소비단계		
관리단계		
재생단계		

3) 자원순환 추진전략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 계획

단계·부문별 실천계획		○○○○년 투자계획 (백만원)
계		
① 생산단계		
○ 부문별 계획		
실천 계획		
② 소비단계		
○ 부문별 계획		
실천 계획		
③ 관리단계		
○ 부문별 계획		
실천 계획		
④ 재생단계		
○ 부문별 계획		
실천 계획		

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단위: 톤/일)

폐기물종류	실적	예측
	○○○○년	○○○○년
가정생활		
사업장생활계		
사업장배출시설계		
지정		
건설		

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 폐기물 처분 현황

(단위: 톤/일)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처리량	(%)	처리량	(%)	처리량	(%)	처리량	(%)	처리량	(%)
가정생활	재활용										
	소각										
	매립										
사업장 생활계	재활용										
	소각										
	매립										
사업장 배출시설계	재활용										
	소각										
	매립										
지정	재활용										
	소각										
	매립										
건설	재활용										
	소각										
	매립										

▶ 폐기물 재활용 현황

(단위: 톤/일)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처리량	(%)	처리량	(%)	처리량	(%)	처리량	(%)	처리량	(%)
가정생활										
사업장생활계										
사업장배출시설계										
지정										
건설										

6) 폐기물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

구 분		목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생활계 (가정생활+ 사업장생활계)	감량후 발생량(톤/년)					
	1인당 발생량 (kg/인/일)					
	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					
사업장배출시설계	감량후 발생량(톤/년)					
	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					
지정	감량후 발생량(톤/년)					
	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					
건설	감량후 발생량(톤/년)					
	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					

7) 폐기물 처분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 폐기물 처분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현황

매립시설	시설명	총 매립 면적 (천㎡)	총 매립 용량 (천㎡)	기 매립량 (천㎡)	잔여 매립 가능량 (천㎡)	○○○○년 매립량 (천㎡)	공공 /민간
소각시설	시설명	시설용량 (톤/일)		○○○○년 처리량 (톤)		공공 /민간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시설명	시설용량 (톤/일)		○○○○년 처리량 (톤)		공공 /민간	
생활자원회수센터	시설명	시설용량 (톤/일)		○○○○년 처리량 (톤)		공공 /민간	

▶ 폐기물 처분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향후 설치 계획